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20

2021. 11. 24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1. 4. 복진경 의원 등 5명

나. 상정의결

-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1. 24.)
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)

○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 2건을 일괄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～제2조)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효섭)

○ 금번 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에 따라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, 일괄개정안을 만들어 본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임

○ 따라서,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,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일부개정은 인용조문 적용사항으로 적절하다 사료됨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.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
(복진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20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4.
발 의 자 : 복진경·한윤수·이상애·김형대·허주연(이상5인)

1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1. 1. 12. 공포, ’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～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・구조문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·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불수리사항 통지)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원이 「청원법」 제5조, 제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3조(불수리사항 통지) 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86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